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임대인 모집 공고('26.11.04.)

■ 「HUG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은 ① **임대인-임차인-전월세안정화기구***가 **3자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②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기구**에 **예치**하면, ③ **기구**가 **예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④ **임대인**에게 **예치금 운용수익(월세)**을 **매월 제공**하는 **"자율참여형"** 사업입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예치금 관리·운용·반환, 임대인 모집·임차인 연계 지원 등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 HUG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임대인은 **반드시 본 공고문에 기재된 사업 세부 내용을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모집공고일('26.11.4.) 이후 상시**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 **(신청자격)** 소득, 연령 등 **별도 제한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개인 무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음(단, 임차인은 개인만 참여 가능)
 - 주택 유형 및 소재지에 따른 제한사항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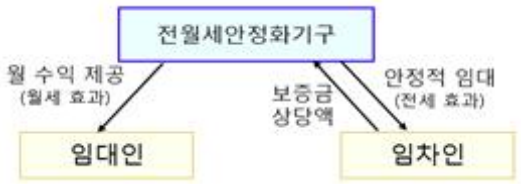
 * 다만,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거래 등을 위하여, **개인**인 **임대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요건)** 임차인 주거안정 등을 고려, **주택가격 20억원 이하**, **기존 선순위채권**은 **주택가격**의 **80% 이내**, **예치금**(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에서의 보증금 상당액)은 **적정 전세시세 이내**이어야 합니다.
- **(계약 및 예치기간)** 임대차계약기간은 **최소 2년**이며, **예치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 이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예치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과 연동하여 연장됩니다.
- **(신청방법)**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개인)**과 **전월세안심신탁센터 및 전국 HUG 지사**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개인·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가입신청서 등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계약체결)** 임대인-임차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 간 계약체결은 **임차인**이 **모집**되어 필요한 **검증절차**를 **통과**한 건부터 **순차** 진행됩니다.
 -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는 **안심전세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11월 중 게시 예정)
 - 신청 후 **6개월 내 임대차계약 미체결** 시 **재신청**이 **필요**하므로, 이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 및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HUG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 사업개요

- **전세**와 **월세**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주거지원 제도**로서 **전월세안정화기구**(HUG)를 통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실시
 ⇒ **임차인**(전세선호 & 전세금 보호) ↔ **임대인**(월세선호 & 연체·공실우려 해소) 간 **수급 불균형 해소**



① 임대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임차인 **3자 간 계약 체결**
② 임차인은 예치금(보증금 상당액)을 기구에 **예치**
③ 기구는 **예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 후 **반환**
④ 임대인은 **예치금 운용수익**을 매월 **수취**(≒월세)

- 임대인 - 임차인 간에는 "**보증금 없는 월세 형태**"의 임대차 구조

■ 임대인 주요 혜택

- 전월세안정화기구의 **매월 고정적 수입 지급**을 통해, 임차인의 월세 **연체 · 미납리스크 해소**
 * 안정화기구는 예치금을 투자 · 운용하여 **매월 연 4% 초중반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제공
- 참여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 약정수익**(임대소득으로 분류)에 대한 **법인세 · 소득세 감면혜택** 제공
 * 안심신탁 임대소득에 대해 50% 세액감면, 감면되는 세액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진
 **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세제혜택 내용은 법 개정이 완료되어야 확정
- 후속 임차인이 없어 **공실**이 발생해도 **최대 2개월간 월 수익 보장**(사업 계속참여 등 일정요건 충족 시)
 * HUG 홈페이지(안심전세포털) 공고 등을 통해 **후속 임차인 모집**을 **지원**
-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면제**로 **보증수수료 ZERO, 비용부담 ZERO**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연금 가입자(※ 세부 요건 등은 별도 발표 예정)가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규제지역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실거주 의무 예외를 허용
 → 안심신탁 월 수익과 주택연금 동시 수령을 통한 안정적 노후수익 확보
 * 사업참여 희망 시, 주택연금 먼저 가입 후 안심신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필요

■ 임차인 주요 혜택

- 믿을 수 있는 **공적 기구**가 **예치금**을 **관리**하여 **전세금 미반환 원천 예방**
-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며 **목돈 마련** 가능, 급격한 월세화 과정에서 **주거비 부담 완화 효과**
- 임차인의 목돈 마련 지원을 위해 **예치금**에 대한 **전용대출 제공**
 * 전월세 안심신탁 전용대출 상품(기금대출, 시중은행 대출) 연내 출시 예정
-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불필요**하므로 **가입 부담**도, **보증료 부담**도 **ZERO**

■ 모집일정

절 차	내 용	일 정	비 고
❶ 임대인 모집공고	• 가입요건, 모집절차 등 공고, 가입신청서 배포	'26.11.04.	홈페이지
❷ 임대인 신청접수	• 임대인 가입신청서 등 제출	'26.11.04.~	홈페이지 / 전담센터·지사
❸ 1차 검증	• 주택(압류, 위반건축물 여부 등), 희망 예치금 적정성 검증	**신청접수 이후**	홈페이지 / 알림톡 등 통지
❹ 임차인 매칭 지원	•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매물정보 공유	**1차 검증 통과 이후**	홈페이지
❺ 임차인 등록	• 매칭 임차인 정보 등록	**임차인 매칭 이후**	홈페이지 / 전담센터·지사
❻ 2차 검증	• 주택요건, 임대인-임차인 협의조건 최종 검증 및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 공사 날인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 이후**	홈페이지 / 알림톡 등 통지
❼ 계약체결	• 임대인-임차인 계약서 날인 및 임차인 계약금 예치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검증 이후)	위탁기관
❽ 잔금/입주	• 임차인 잔금 예치 · 납부 확인 및 입주	**임대인-임차인 간 협의**('27.1월~)	홈페이지 / 알림톡 등 통지

* ❷ **임대인 신청 · 접수**는 **모집공고일 이후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후 6개월 내 계약 미체결** 시 **재신청**이 필요하오니 이에 유의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❹ **임차인 매칭 지원**은 **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주택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및 공인중개사 연락처 등 주택에 관한 정보를 등재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택에 대해 문의 또는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HUG의 별도 중개 또는 알선행위는 없음)

* **임대인**이 **임차인**을 **직접 모집**하여 임차인 매칭 지원이 불필요한 경우, ❸ **1차 검증**과 ❹ **임차인 매칭 지원 절차**는 **생략**하고, 다음 단계인 임차인 등록부터 진행됩니다.

* ❺ **임차인**이 **직접** 공사 **홈페이지** 또는 **전담센터 · 전국 지사**에 **방문**하여 임차인 정보를 공사에 등록하며, 공사는 임차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❼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는 **안심전세포털(11월 중 게시 예정)**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해당 서식을 사용하여 **3자 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❼ 계약체결 시 예치하는 **계약금**은 **전체 예치금의 10%** 금액으로 하고, 계약체결 시점에 HUG가 지정한 계좌로 납부합니다.

* ❼ **계약체결**은 공사가 지정한 **위탁기관**(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모집공고에 따른 ❽ **잔금납부 및 입주는 '27.1월부터 임대인-임차인 간 계약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적격**하게 **제출**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주택의 **1차 검증** 및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제출서류 보완 안내, 각 단계별 검증 결과는 공사 홈페이지 또는 알림톡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업참여 기간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최소 2년)에 **연동**하여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임대차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계약종료** 및 **연장**(갱신) **의사 확인**을 위한 **별도 안내** 예정
 -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예치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과 **연동**하여 **연장 운영**
 -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예치금**이 **증액**(5% 이내)되는 경우, 그 증액분을 공사에 **추가 예치** (단, 증액분을 월세 형태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추가 예치 불필요)

※ **임대조건 변경(또는 갱신) 시 절차 및 유의사항**

-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예치금,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변경 임대조건**을 **사전**에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 변경 임대조건이 **적정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 및 법적 **임대료 증액제한(5%)**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검증을 거친 **변경 조건**은 임대인·임차인·공사 3자 간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때에 **확정**되며, 변경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요건

■ 신청자격

- 소득, 연령 등 **별도 제한없이 참여를 희망하는 누구나** 신청가능합니다.
 - **법인 · 개인 무관,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상관없음** (단, 임차인은 개인만 참여 가능)
 - **주택 유형** 및 **소재지**에 따른 **제한사항 없음**

 * 다만, 임대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 · 비속은 임차인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사업 목적에 비추어 적합하지 않다고 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대상주택 요건(❶ & ❷ & ❸ & ❹)

❶ 주택가격	▪ **대상주택의 주택가격 ≦ 20억원** ▪ 주택가격은 아래 **산정기준 순서**에 따른 금액을 적용 (단, 감정평가금액은 아래 산정기준에 우선하여 적용 가능) **[아파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1) KB시세정보[일반평균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하한가와 상한가 산술평균] * 다만 필로티 여부를 불문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1호, 101호 등)에 따른 아파트의 최저층과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위평균가(KB) 또는 하한가(부동산테크) 적용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3) 안심전세 App에서 공시되는 주택시세의 하한가 4)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5) 분양가격의 90%(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6)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연립, 다세대]**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2) 안심전세 App에서 공시되는 주택시세의 하한가 3) 해당 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 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단독, 다중, 다가구]** 1)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2) 해당 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3)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시가표준액 확인방법: 취득세납부확인서 또는 유선으로 관할지자체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 감정평가금액 적용 시** -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을 것 - 감정평가는 평가대상물건을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을 할 수 있음 - 공공택지 및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토지가 지적미정리로 대지권이 미등기인 경우에는 대지지분을 포함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음
2 선순위채권	▪ **<u>대상주택의 선순위채권 합계액 ≦ 주택가격 × 80%</u>** ▪ **선순위채권** 1) 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채권최고액(채권최고액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액) 2)「신탁법」에 따른 담보신탁의 우선수익자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액 3)「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또는 제3조의4에 따라 등기된 임차권의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 4)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일부인 경우, 같은 건물의 다른 부분에 관하여 전세권의 전세금과「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을 포함)의 보증금 중 반환되지 아니한 금액

<table>
<tr><td colspan="2">3 건축물적법성</td><td>▪ 임대주택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
1)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2) 건축물대장상 주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 외에 해당하는 경우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상 압류 · 가압류 · 가등기 등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 서류의 위 · 변조, 허위 기재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대상주택에서 제외 · 선정 취소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td></tr>
<tr><td colspan="2">4 적정 전세시세</td><td>▪ ① 대상주택의 예치금* ≦ ② 적정 전세시세
* 일반적인 주택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상당액을 의미</td></tr>
<tr><td></td><td>① 임차인 예치금의 정의</td><td>▪ (전세형) 사업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상 예치금
▪ (준전세형) 사업신청 시 제출한 신청서상 예치금과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월 임대료를 아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
*「예치금 〉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월 임대료 × 240」 경우에만 준전세형 허용
→ 환산예치금 = 예치금 + [월 임대료 × 12 ÷ 전월세전환율*]
* 부동산통계정보(R-ONE) 內 주택유형·시도별 전월세전환율 적용</td></tr>
<tr><td></td><td>② 적정 전세시세</td><td>▪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전세시세 있는 경우) 해당 전세시세 적용
▪ (KB부동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전세시세 없는 경우) 1 주택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금액에 주택유형 · 지역별 전세가율*과 보정치(120%)를 곱한 금액을 적용
* 부동산통계정보(R-ONE) 內 주택유형·지역별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적용
※ 다만, 산정한 전세시세가 인근 유사주택의 실거래가(2년 이내) 대비 과도한 경우 제한 가능</td></tr>
</table>

3 임대인 약정수익률 고시

■ 약정수익률: 연 4.35%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기간(갱신 포함) 동안 보장**하는 **수익률**입니다.

* 약정수익률은 **계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고시된 수익률**을 **적용**하며, **반기마다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 약정수익률을 '26.11월(최초 고시), '27.6월(변경 고시) 고시하는 경우
 : ~'27.5월 계약 체결 시(변경 고시 전)→ 계약기간 동안 연 4.35% 수익률(최초 고시 수익률) 적용
 '27.7~12월 계약 체결 시(변경 고시 후)→ '27.6월 고시 약정수익률(변경 고시 수익률) 적용

* 기존 계약의 갱신이 아닌 **신규 임대차계약**의 경우, 가장 **최근 고시된 약정수익률**이 **적용**됩니다.

 예 새로운 임차인과의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체결 등

* 약정수익금은 **매월 지정**된 **약정일**(익월 25일)에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됩니다.

※ **약정수익금 지급 예시**

- **전세금 2억원 주택으로 금번 고시된 약정수익률 4.35% 적용기간 내 안심신탁사업 계약체결 시,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매월 725,000원 고정 지급**(☞ 연간 8,700,000원, 연 4.35% 적용)

4 신청방법

-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 입력에 따른 부적격,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적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입력)하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방법 ☞ 개인만 가능

①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접속하여 「전월세 안심신탁」 버튼 클릭
② 「모집공고 및 임대인 신청」 페이지 접속
③ 「제1차 임대인 모집공고」 선택
④ 상세정보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버튼 클릭
⑤ 휴대폰 본인 인증 로그인
⑥ 신청정보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및 실명 확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필요사항 동의
⑧ 신청 완료

※ 신청 후 신청내역은 「임대인 신청내역 및 계약관리」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개인·법인 모두 가능

① 「HUG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 접속하여 「전월세 안심신탁」 버튼 클릭
② 「모집 공고문」 또는 「공지사항」 페이지에서 제출서류 서식 다운로드 및 작성
③ 신청서 등 서류 지참 후, 전월세안심신탁센터 및 전국 영업점(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방문
④ 신청 완료

※ 신청 후 신청내역은 「임대인 신청내역 및 계약관리」 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방문접수 가능 영업점**: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서울북부·동부·서부·남부지사, 인천지사, 경기북부·남부지사, 부산울산지사, 대구경북지사, 광주전남지사, 대전충남지사, 강원지사, 충북지사, 전북지사, 경남지사, 제주출장소(☞ 영업점별 상세 주소는 공고문 12페이지 참고)

5 제출서류 안내

- **참여신청 임대인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 시 필요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경우 참여가 취소됩니다.**

■ 임대인 신청 제출서류 (자격검증 등 진행 과정에 따라 추가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내 용	발급처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신청서 [☞ 붙임 1~3]	• (개인) [붙임 1] 작성 • (법인) [붙임 2, 3] 작성 * 개인의 경우 안심전세포털 신청 시 포털 내에서 작성 가능	HUG 안심전세포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붙임 4]	• (동의방법) **임대인 정자 자필 서명** (개인만 해당) • (주의) **필수 동의란에 체크,**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 **임대인별 작성** 필요 * 개인의 경우 안심전세포털 신청 시 포털 내에서 작성 가능 (단,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 실물 서류 작성 후 포털 업로드 필요)	
국세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임대인 전원 납세 증명서 제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등	• **법인만 해당**	-
신분증 사본	• **임대인 전원 신분증 사본 제출** (개인만 해당)	-
계좌 사본	• **월 약정수익금 수취**를 위한 **임대인 본인 명의** 계좌 사본 제출	-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

- **(온라인 신청) 신청 필요 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전자화 문서**로 생성한 후 제출
- **(오프라인 신청)** 신청서 및 동의서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인쇄**하여 **기재사항 작성 후 자필 서명**

✔ **스캔 또는 사진촬영(모바일 · 디지털기기) 유의사항**

- **스캔 또는 사진촬영 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불가**합니다.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한 종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한 뒤 한 개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 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 시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 형식은 PDF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 **서류 작성 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임대인 전원 **정자로 자필 서명(성명 정자 작성)**

올바른 예	틀린 예
본인 성명: 김 허 그 김허그 ※ 만 14세 이상의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본인 성명: 김 허 그 KIM ※ 만 14세 이상의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전자화 문서가 접수된 경우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불응 시 서류 미제출로 간주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유의사항

■ **아래 유의사항과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인 사업신청	• **신청자가 신청한 내용을 근거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부적격,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으로 인한 적격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 전 공고문에 명시된 신청자격 및 대상주택 요건 등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 보호와 투명한 임대차 거래 등을 위하여, 개인인 임대인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거쳐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에 한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후 담당자가 배정된 이후에는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수정이 불가하므로, 배정된 담당자 유선 상담 또는 전월세안심신탁센터 방문을 통해 변경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접수는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앱을 통한 참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서는 안심전세포털(11월중 게시 예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계약서에 따라 임대인-임차인-전월세안정화기구(HUG) 간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 계약체결은 임차인이 모집되어 필요한 검증절차를 통과한 건부터 순차 진행됩니다. • 계약체결은 공사가 지정한 위탁기관(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은 해당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직후, 계약금은 공사가 지정한 계좌(임차인별로 개별 부여한 가상계좌를 포함)에 즉시 예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예치하는 계약금은 전체 예치금의 10%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잔금 예치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잔금 예치 전까지 임차인은 예치된 계약금을 임대인에게 해약금으로 지급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사는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에게 예치된 계약금을 지급합니다.**
잔금예치 /주택인도	• 잔금은 임차인의 입주시점까지 공사가 지정한 계좌(임차인별로 개별 부여한 가상계좌를 포함)에 전액 예치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대상주택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약정수익 지급	• 전월 약정수익은 그 다음 달 지정된 약정일(25일)에 월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월과 종료월의 약정수익은 해당 월의 날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합니다. • 약정수익을 지급받을 계좌는 반드시 임대인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약정수익은 세법상 임대소득으로 과세 처리되므로 세무 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거나 대상주택의 양도와 함께 임대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경매에 따른 양도 포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수익권은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공사는 월 약정수익을 대상주택 소유권의 이전일을 기준으로 그 전날까지는 종전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일부터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각 지급합니다.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에는 공사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월 약정수익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한 상속인에게 유보된 월 약정수익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며, 유보된 월 약정수익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치(계약) 기간	• **예치금의 예치기간은 임대차계약기간(최소 2년)에 연동하여 동일하게 운영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따라 임대차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예치기간도 임대차계약기간과 연동하여 연장 운영합니다. • 임대차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예치금이 증액되는 경우, 임차인은 예치금 증액의 효력이 발생한 날에 그 증액분을 공사가 지정한 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 시 예치금, 월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변경 임대조건을 사전에 공사에 통지하고, 공사의 적정성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 변경 임대조건이 적정 전세시세 이내인지 여부 및 법적 임대료 증액제한(5%)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 검증을 거친 변경 조건은 임대인·임차인·공사 3자 간 변경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한 때에 확정되며, 변경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개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관리	• **주택 및 내부 시설물의 하자 및 보수 · 수선에 관한 부담 주체는 관계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주택 및 내부 시설물의 하자 및 보수 · 수선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 간에 직접 해결해야 하며, 공사는 이에 대한 중재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예치금 반환	• 공사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예치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주택 훼손, 임차인의 월임대료 연체(준전세인 경우) 등의 사유로 임대인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최대 2개월까지 예치금 일부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2개월 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유보금의 처리에 합의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요청 시, 공사는 합의된 내용에 따라 유보금을 반환하며, 2개월 내 합의되지 않는 경우, 공사는 공탁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제외한 유보금을 관할 법원에 공탁합니다. • 임대차계약 종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명도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공사는 예치금 전액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주택을 명도할 때까지 임대인에게 별도의 가산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면, 공사는 유보된 예치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가산 임대료를 미납한 경우, 해당 금액을 예치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의 예치금 대출을 취급한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의 예치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음을 공사에 통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할 예치금은 해당 금융기관 등에 반환합니다.
계약 사후관리	•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해 공실 발생 시, 후속 안심신탁 임대차계약 임차인의 입주 시점에 맞추어 실제 공실기간(최대 2개월 한도)에 해당하는 월 약정수익을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 공실기간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후속 임대차계약의 임대차 개시일 전날까지로 산정하며, 그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을 공실기간으로 판단합니다. - 공실기간 약정수익은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전 공사의 임차인 매칭 지원을 신청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당 1회에 한하여 기존 임대차 계약이 정상 종료된 경우 지급합니다. (기존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

관련항목	유의사항
	• **임대인이 대상주택을 매도할 목적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체결의 사실을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임대인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 승계 확약서를 징구하여 대상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공사 및 임차인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은 대상주택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이 설정된 경우 해당 등기가 마쳐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법원의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해당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인으로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는 공사에게 기존 임대인의 사망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고, 상속등기가 완료되는 경우 상속등기 완료사실 및 본인이 대상주택의 적법한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임대차 승계 확약서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있으며, 공사는 신고 의무를 부담하거나 이를 대행하지 아니합니다.** • **기타 세부내용은 안심전세포털에 기재되어 있는 Q&A,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등)가 변경될 경우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연락처를 변경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항은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7 문의처

<table>
<tr><td rowspan="2">가입 및
사업 문의</td><td>개인고객</td><td>☎ HUG 콜센터 1566-9009 (평일 09:00~18:00)</td></tr>
<tr><td>개인고객
법인고객</td><td>▶ 방문 문의처 (평일 09:00~18:00)
<table>
<tr><th>지역</th><th>주소</th></tr>
<tr><td>전국(전담)</td><td>• [전월세안심신탁센터]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태흥빌딩 3층</td></tr>
<tr><td rowspan="4">서울</td><td>• [서울북부지사]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41(서린동) 영풍빌딩 5층</td></tr>
<tr><td>• [서울동부지사]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역삼동) 동훈타워 5~6층</td></tr>
<tr><td>• [서울서부지사]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여의도동) 태흥빌딩 4층</td></tr>
<tr><td>• [서울남부지사]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4(서초동) 오퓨런스빌딩 2층</td></tr>
<tr><td>인천</td><td>• [인천지사] 인천 남동구 백범로 357(간석동)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회관 14층</td></tr>
<tr><td rowspan="2">경기</td><td>• [경기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의정부동) 2층</td></tr>
<tr><td>• [경기남부지사]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78(인계동) 교직원공제회관 9층</td></tr>
<tr><td>부산·울산</td><td>• [부산울산지사] 부산 동구 중앙대로 240(초량동) 현대해상 부산사옥 14층</td></tr>
<tr><td>대구·경북</td><td>•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범어동) 교직원공제회관 15층</td></tr>
<tr><td>광주·전남</td><td>• [광주전남지사] 광주 서구 시청로 26(치평동) 광주빛고을센터 6층</td></tr>
<tr><td>대전·충남</td><td>• [대전충남지사] 대전 서구 둔산북로 56(둔산동) 한화생명둔산사옥 10층</td></tr>
<tr><td>강원</td><td>• [강원지사] 강원 원주시 북원로 2135(무실동) 농협은행원주시지부 3층</td></tr>
<tr><td>충북</td><td>• [충북지사]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강서동) BYC빌딩 12층</td></tr>
<tr><td>전북</td><td>• [전북지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서신동) 한국교직원공제회 3층</td></tr>
<tr><td>경남</td><td>• [경남지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상남동) 한국산업은행 1층</td></tr>
<tr><td>제주</td><td>•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연동) 삼성화재빌딩 6층</td></tr>
</table></td></tr>
<tr><td>계약 문의</td><td colspan="2">※ 계약업무 위탁 법무법인 최종 선정 후,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별도 안내 예정</td></tr>
</table>

2026. 11. 04.

주택도시보증공사

【붙임 1】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신청서[개인용]

▣ 소유주(임대인) 기본정보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주 소			
▣ 공동임대인 기본정보			※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e-mail 주소	
주 소			
▣ 사업 참여 대상주택 기본정보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 기타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잘 모르겠음	(가)압류·가등기 존재여부	☐ 존재 ☐ 미존재 ☐ 잘 모르겠음
주택 소재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주택면적	전용면적 ㎡	희망 임대차기간	~ (개월)
희망 임대차 유형(택1)	☐ 전세형	예치금 : ₩ 원	
	☐ 준전세형	예치금 : ₩ 원, 월 임대료 : ₩ 원	
임차인 매칭 지원 필요여부	☐ 임차인 매칭지원 필요함 ☐ 임차인 매칭지원 필요하지 않음 ※ 임차인 매칭지원이란 대상주택 정보(공인중개사 연락처 등 포함)를 인터넷 홈페이지(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담당 공인중개사 정보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기타사항			
안 내 사 항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을 SMS 또는 알림톡 등으로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후속 검증절차 등에 따라 참여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신분증 사본 각 1부, 계좌사본 1부		

본인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 임대인 성 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붙임 2】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신청서[법인용]

▣ 소유주(임대인) 기본정보			
상호명		법인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
연락처		e-mail 주소	
주 소			
▣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참여 희망주택 기본정보 ※ 사업신청 희망 주택이 다수일 경우, [붙임 3] 주택현황 목록표에 별도 기재하여 첨부·제출			
주택유형	☐ 아파트 ☐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다가구주택 ☐ 주거용오피스텔 ☐ 기타		
위반건축물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 잘 모르겠음	(가)압류·가등기 존재여부	☐ 존재 ☐ 미존재 ☐ 잘 모르겠음
주택 소재지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주택면적	전용면적 ㎡	희망 임대차기간	~ (개월)
희망 임대차 유형(택1)	☐ 전세형	예치금 : ₩ 원	
	☐ 준전세형	예치금 : ₩ 원, 월 임대료 : ₩ 원	
임차인 매칭 지원 필요여부	☐ 임차인 매칭지원 필요함 ☐ 임차인 매칭지원 필요하지 않음 ※ 임차인 매칭지원이란 대상주택 정보(공인중개사 연락처 등 포함)를 인터넷 홈페이지(안심전세포털) 등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의미함		
▣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	
▣ 담당 공인중개사 정보 ※ 해당 주택을 공인중개업소에 임대차 매물로 의뢰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			
상호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 기타사항			
안 내 사 항	[] 사업 관련 안내사항을 SMS 또는 알림톡 등으로 수신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 후속 검증절차 등에 따라 참여대상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첨 부 서 류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1부, 법인 등기사항전부 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 인감증명서 1부, 계좌사본 1부**		

본인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위 기재사항과 첨부된 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였기에, 참여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법 인 명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붙임 3】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신청 주택현황

NO	주택유형	위반건축물 해당여부	(가)압류·가등기 존재여부	주택 소재지 (주소)	주택 면적(㎡)	희망 임대차기간	희망 임대차 유형	전세형	준전세형	임차인 매칭지원 필요여부
								예치금	예치금 /월 임대료	
1	*아파트*	*x*	*x*	*서울시 강남구 ○○로 100 101동 101호*	*59*	*~*	*전세형*	*500,000,000*	*-*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신청인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붙임 4】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 및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월세안정화기구로서,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목적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대상주택 물건지 주소, DI(중복가입확인정보)	**신청일로부터 6개월 (계약자는 영구)**	본인 확인, 주택소유 확인, 고지사항 전달, 전월세 안심신탁 임대차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계약체결 및 관리, 예치금 수납관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24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가. 수집·이용 항목: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나. 수집·이용 목적: 본인 확인, 주택소유 확인, 고지사항 전달,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을 위한 절차 진행, 계약체결 및 관리, 예치금 수납관리

다. 수집·이용 근거: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라. 보유·이용 기간: **신청일로부터 6개월, 계약자는 영구**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관련 정보를 보존합니다.

2. 사업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항 목	보유·이용기간	수집·이용 목적
휴대전화번호	**신청일로부터 1년 (계약자는 영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문자 발송, 전화 등)**

※ 위의 항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선택정보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신청에는 제한이 없으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업관련 관련 정보제공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선택]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여부

제공받는자	제공목적	제공 항목	보유·이용기간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업무 수탁기관	**계약을 위한 절차진행(사전안내, 계약체결), 대항력 조사, 계약 사후관리(변경, 갱신, 해지 등)**	성명,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대상주택 물건지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일로부터 6개월 (계약자는 영구)**

※ 위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월세 안심신탁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필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필수]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20 . . .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이상의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서명

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

【붙임 5】 *※ 위임내용에 따라 가감·수정 가능합니다.*

위 임 장

위임인 (본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			
	주 소			
	연 락 처			
수임인 (대리인)	성 명		위임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위임사항	대상 주택			
	1			
	2			
	3			
	4			
	5			
	6			
	7			
	8			
	9			
	10			
	상기 주택의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안심신탁사업 신청, 계약체결 등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한(서류 작성 및 보완 등 일체) 및 사업 관련 발송되는 모든 통지에 대한 수령(우편, 이메일, 알림톡 등 일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			

본인은 위 수임인에게 위임 사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향후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임인(본인)과 수임인(대리인)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귀 공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임인(본인) (인)

수임인(대리인) (인)

첨 부 1.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원본 및 사용인감계 1부.
2. 위임인 및 수임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위임장 제출 시 모든 사업신청 서류에 본인·대리인의 성명 기재 후 '수임인의 서명(인감가능)' 또는 '위임인의 (사용)인감과 수임인의 서명(인감가능)을 함께 날인'하여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귀중